

기술인력과 시설의 투입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기술인력

부문(직무 분야)	인 원	자 격 기 준
가. 기계(일반산업기계·용접 분야)	책임 검사원 1명 이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술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장비 관련 설계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시설장비 관련 업무에 총 3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전기(전기설비·전기전자 응용분야)	주임 검사원 1명 이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중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고급기술자로서 계측제어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금속(비파괴 검사 분야)	검사원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중급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비파괴검사분야의 기술자격보유자

2. 검사시설

부문	시 설 보 유 기 준
가. 기계	갭(Gap) 측정기, 도막(도료 도포막)두께 측정기, 진동 측정기, 다이얼(Dial) 측정기, 베어링 측정기, 깊이 측정기, 회전속도 측정기, 강재 줄자(1급, 50m), 오일 측정기, 두께 측정기, 소음 측정기, 마이크로 미터, 광파 측정기, 기어 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및 구조해석 프로그램 각 1대 이상
나. 전기	종합계전기 시험기, 회로 시험기, 전류·전압 파형분석기,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 측정기 및 전류 측정기 각 1대 이상
다. 금속	초음파 탐상기 및 자분 탐상기(磁粉 探傷器) 각 1대 이상

비고 : 검사측정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정·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